

「고흥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고 흥 군 의 회 의



## 고흥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고흥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임대료 및 물품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및 하수급자의 권익 보호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적용대상, 대상사업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안 제3조 ~ 안 제5조)
- 다.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등 사용 확인(안 제6조)
- 라.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불서약서, 표준계약서, 임금청구확인서 작성 및 제출(안 제7조 ~ 안 제9조)
- 마. 체불신고 전담창구 지정·운영 및 상담(안 제10조, 안 제11조)
- 바. 자료제출 요구(안 제12조)



## 고흥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임대료 및 물품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권익 보호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휴업수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8. “체불물품대금”이란 공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재 물품 등을 구입하고 미지급한 대금을 말한다.
9. “관급공사”란 전라남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1.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주가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등 사용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부터 근로자 사역내역서(별지 제1호서

식)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한 후, 사업 준공시 계약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 담당부서는 공사감독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과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급이행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급이행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계약서 작성)**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를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

과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체불신고 전담창구 지정·운영)** ① 군수는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체불신고센터 전담창구를 지정·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부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연중

3. 신고대상: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체불임  
대료 및 체불물품대금

4. 신고방법: 서면접수

가. 주간(09:00 ~ 18:00): 계약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 ~ 09:00)·휴일(공휴일): 군청 당직실

②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체불신고는 별지 제6호의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창구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 상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체불물품대금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관급공사 계약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근로자 사역내역서(제6조 관련)

- 사업명 :
- 업체명 :
- 공사기간 :

| 근로자 |    | 사역일<br>( ~ 일간) | 연락처 | 비고 |
|-----|----|----------------|-----|----|
| 성명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확인    | 부서 | 직급 | 성명  | 비고 |
|-------|----|----|-----|----|
| 공사감독자 |    |    | (인) |    |

고흥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제6조 관련)

- 사업명 :
- 업체명 :
- 건설기계명 :

| 건설기계 사용주 |    | 사용일수<br>( ~ 일간) | 연락처 | 비고 |
|----------|----|-----------------|-----|----|
| 성명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확인    | 부서 | 직급 | 성명  | 비고 |
|-------|----|----|-----|----|
| 공사감독자 |    |    | (인) |    |

고흥군(분임)재무관 귀하

##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급이행서약서(제7조 관련)

저희 업체에서는 고흥군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고흥군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과 물품대금 등을 정당한 근로·거래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고흥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임금청구확인서(제9조 관련)

사업명 :

업체명 :

공사기간 :

| 근로자 |    | 사역일<br>( ~ 일간) | 청구금액(원) | 본인확인(인) | 연락처 | 비고 |
|-----|----|----------------|---------|---------|-----|----|
| 성명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고흥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제9조 관련)

- 사업명 :
- 업체명 :
- 건설기계명 :

| 건설기계사용주 |    | 사용일     | 임대료<br>청구금액(원) | 본인확인(인) | 연락처 | 비고 |
|---------|----|---------|----------------|---------|-----|----|
| 성명      | 주소 |         |                |         |     |    |
|         |    | ( ~ 일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고흥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체불(임금, 임대료) 신고서(제10조 관련)

|                |     |  |     |              |
|----------------|-----|--|-----|--------------|
| 신고자            | 성명  |  | 연락처 | ☎ :<br>휴대폰 : |
|                | 주소  |  |     |              |
| 체불<br>사업장      | 업체명 |  |     |              |
|                | 주소  |  |     |              |
| 신고내용<br>(상담내용) |     |  |     |              |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흥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사항이 비용 발생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작성자

|       |              |
|-------|--------------|
| 작 성 자 | 재무과장 정국균     |
| 연 락 처 | 061-830-5271 |

[붙임 2]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 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